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간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행복나눔과장)
- 발의일자: 2023. 3. 3.(금)
- 회부일자: 2023. 3. 3.(금)
- 검토기간: 2023. 3. 3.(금) ~ 3. 10.(금)

2. 폐지이유

- 각 부서 사업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에 유사·중복사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하여 2001년 10월 11일 제정되었으나
- 이와 유사하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으며, 이를 상위법령으로 하는 「대구

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단전, 단수 혹은 건강보험료·주택임차료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폐지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업목적, 대상자 유형 등이 유사하고, 대구광역시 또한 단일 기준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등 제정 목적과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시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상위법령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서구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